

기술자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제도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글 안철홍_ 현 포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이번 회부터 수회에 걸쳐서 “기술자(연구자 및 중소기업 CEO를 포함)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관련된 특허의 기초지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제도의 하나인 특허제도는 원래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특허제도는 지식재산권제도를 대표해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입장에서는 특허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자는 특허제도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특허와 관련된 법조문을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자가 기술개발의 결과를 특허 출원하는 입장과, 타인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시에 특허제도 하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 조문에 대해서는 번거롭게 생각하는 기술자 분들이 많아서 될 수 있는 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다음의 목차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요

목차

제1장 지식재산제도의 개요

- 1-1. 지식재산권의 분류
- 1-2. 기술자와 지식재산권제도
- 1-3. 특허권을 취득하는 의미
- 1-4. 자연과학과 법률

1-1. 지식재산권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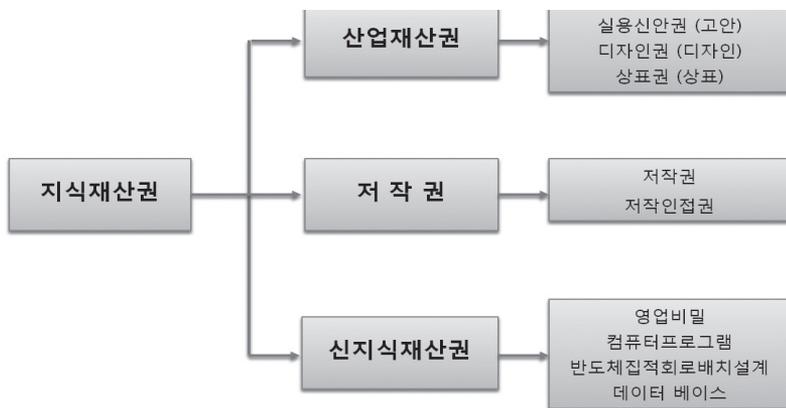
1-1-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술자에게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특허(特許)와 실용신안(實用新案)입니다. 이번의 소개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식재산권 전체의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그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에 의한 「지식 창조물」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상표·디자인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반도체회로 배치설계, 신품종개량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의 도1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체계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2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되어 있고, 이것은 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대표하여 종종 특허권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1-2. 기술자와 지식재산권제도

1-2-1. 기술자와 특허제도

특허권(特許權)은 독점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개발자는 그 기술을 비밀로 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그 결과 동일한 기술내용이 타인에 의해 개발된다고 하는 헛된 일이 생기며 기술개발의 촉진을 방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손해이며, 한 국가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을 공개(公開)하는 대가로 그 기술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獨占權)을 보장해서 기술개발의 의욕을 고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1 지식재산권의 분류



도2 산업재산권 개요



결국, 특허제도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공개하는 대상(代償)으로서」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의 취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도3 참조). 참으로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절묘한 절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신기술을 비밀로 하지 아니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제도 하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비밀로 되지 않고 공개되는 것에 의해, 제3자가 그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신기술 개발이 촉진되기 때문에, 신기술의 공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기술개발을 주된 업무로서 하는 기술자는 그 특허제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공개에 따라 유효한 특허권(독점권)을 얻기 위해서는, 독점권의 획득절차인 출원과정에서 특허명세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여 공개한 기술자로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일반공중(一般公衆)으로서의 제3의 기술자는, 공개된 기술에 기초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일까? 타인의 신기술개발정보에 기초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자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실제로는 매우 적을 것이며, 대다수는 완전히 무관심하다고 생각됩니다. 타인의 신기술정보를 읽지 아니하는 기술자는 독점권을 타인에게 빼앗길 뿐이고, 신기술의 정보를 받는 장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특허제도의 마이너스적인 면만을 얻고 있는 것이 됩니다¹⁾.

1-2-2. 특허제도의 활용

기술자는 상황에 따라, ①스스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시하여 독점권을 취득하는 발명자로서의 입장, ②이와는 반대로, 타인(타사)의 신기술 정보를 받는 일반공중의 입장에 있습니다(도4참조). 이 2가지 입장에서 특허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자가 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¹⁾.

1-3. 특허권을 취득하는 의미²⁾

1-3-1. 자사기술(自社技術) · 제품보호(製品保護)와 유저(user)보호
특허발명이, 자사기술 · 제품에 관한 것이라면, 이 특허발명에 관계되는 특허권에 의해 자사기술 · 제품을 제3자에 의한 무단실시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권자는, 자사기술 · 제품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를 배제하고, 자사기술 · 제품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유저는 안심하여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강한 구입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사의 브랜드 파워는 올라가게 되어 비즈니스를 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1-3-2. 창업화 · 사업화의 수단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기술로 창업화 · 사업화가 용이해지며, 벤처기업의 인큐베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 융자 등을 받기도 하고, 신탁 등도 가능해집니다. 미국 등에서는 대학발(大學發) 벤처기업이 많고,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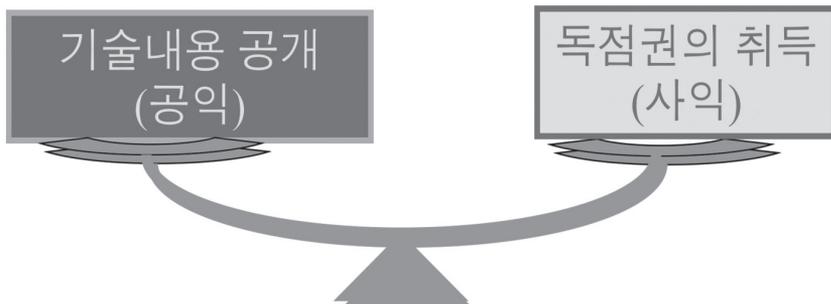
벤처기업의 창업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있고 그것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3-3. 사실상의 기술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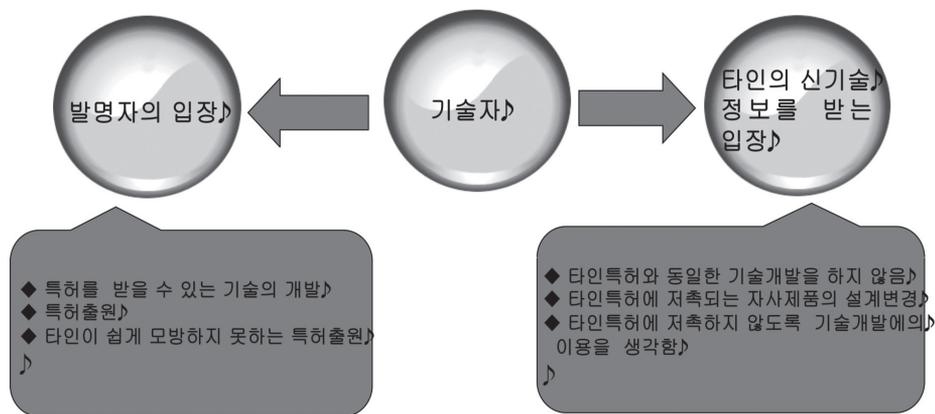
자사기술 · 제품이 유저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면, 그 자사기술 · 제품이 타사제품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우수한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자사기술 · 제품의 사실상(事實上)의 표준화(標準化)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자사기술 · 제품에 관계되는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경쟁회사, 유저 등에 널리 개방(저렴한 라이선스로 또는 무상(無償)으로 개방(開放))하는 것에 의해서도, 그 자사기술 · 제품을 사실상의 표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3-4. 라이선스 교섭의 재료 · 라이선스료 등의 취득

1건이라도 많은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라이선스 교섭의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특허권이 중요한 기술이고, 가치가 높은 것이라면, 라이선스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사의 특허권이 타사의 특허권보다 더 가치가



도3. 개발기술의 공개와 독점권의 취득의 관계



도4. 기술자의 양면성

높은 기술이라면, 타사로부터 라이선스료를 받을 수도 있어서 자사의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기업들은 일찍부터 특허권의 라이선스 수입으로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켜 오고 있습니다.

1-3-5. 특허권의 개방과 기업의 품격향상·브랜드 이미지 향상

근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이유는 제품도 잘 팔리고, 인재도 모이기 쉬운 등의 장점이 있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은, 환경이라는 글로벌적인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때로는 그것을 개방하는 것이 기업의 품격향상, 브랜드 이미지향상,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취득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1-3-6. 연구개발의 활성화, 사실상의 발명보호

특허권의 취득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사내(社內)의 기술자·연구자의 연구개발의욕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특허출원을 해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출원발명이 출원 공개되면 공지발명(公知發明)이 되고, 그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타사에 의해 권리화되는 두려움이 없으므로, 사실상 출원하는 이점은 있습니다(이것을 방여출원이라고도 함).

1-4. 자연과학과 법률

법률(法律)은 가치관(타당성)의 세계라는 점에서, 절대진리(絶對真理)의 세계인 자연과학(自然科學)과는 서로 다릅니다. 법률은 시대와 더불어 신법(新法)이 제정되고, 필요에 따라 종래법(從來法)이 개정(改正)되기도 합니다.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법도 시대와 함께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은 적용영역이 한정되지 아니하는 일반법(一般法)과, 일반법의 적용영역의 일부를 적용영역으로 하는 특별법(特別法)으로 대별(大別)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優先)합니다. 지식재산법의 하나인 특허법(特許法)은, 민법(民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형법(刑法), 행정법(行政法),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등의 특별법이고, 그 대부분은 민법 등의 일반법에서의 특별규정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이공계 전공의 사람들은, 지식재산법이 법률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錯覺)하고, 지식재산법을 원칙(原則)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참고문헌

- 1) 野上邦五郎 : 「특허지식과 활용의 실제」 (日本經濟新聞社, 2003)
- 2) 大塚康英, 廣田浩一 : 「이공계도 알 수 있는 지식재산법강의」 (弘文堂, 2005)